

손주 돌봄 지원사업



맞벌이·한부모 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(외)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
돌봄 수당을 지원 하여 안정적 가정 양육 환경 조성
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

- 지원대상**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
- 돌봄대상** 다자녀가구*의 만 2세 24~35개월 영아(지원기간 12개월)
 * 다자녀가구 :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
 - 어린이집,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, 조손가정은 지원
- 돌봄수당** 월 40시간*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
 * 1일 최대 4시간, 심야시간(22시~06시 제외)
- 소득기준**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(주민등록상 아동가구)
- 신청기간** 2024. 7. 1(월) ~
- 신청서류** 신분증, 손주돌봄수당 신청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
- 문의·접수**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

- 교육이수**
 - ▶ 이수시기 : 지원결정 통보 후 ~ 최초 돌봄 개시 전까지
 - ▶ 교육방법 : 온라인(www.gnsonjudolbom.com) 접속 (이수증 출력 가능)
 ※ 수당 지급 전 교육이수

♥ 교육진행절차



- 활동역할**
 - ▶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봄, 놀이,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
 - ▶ 돌봄 활동 계획서 및 돌봄 활동 일지는 1개월 단위로 10일 까지 읍·면·동으로 제출